

자료집

---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프로그램

- 11:00 사회                    강문대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11:05 모두발언                정연순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1:10 패널1                    노종화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
- 11:20 패널2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1:3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문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40 패널4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11:50 패널5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12:00 종합토론
- 12:20 폐회

## 토론문

---

노종화 /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 I. 대한민국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몰랐던 삼성그룹 승계작업

#### 1. 승계작업의 정의

특검은 ‘승계작업’을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함.

#### 2. 항소심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

항소심은 다음 네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첫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둘째, 이재용이 개별 현안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A1))를 얻었

---

1) 작성자 주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현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효과(A, B, C ... )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A라는 결과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제3자 뇌물공여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므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함.

**넷째**, ① 삼성그룹 계열사를 통할·조정하는 조직이자,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삼성그룹 핵심조직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견회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개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 ② 금융·시장감독 기구의 전문가들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sup>2)</sup>.

### 3. 항소심 판단에 대한 비판

#### (1) 항소심의 논거는 4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단 1개임.

항소심이 내세운 논거는 결코 서로 다른 4개의 논거라고 볼 수 없음.

**첫째·셋째 논거**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 승계작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사실상 동어반복**임. 나아가 항소심은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했으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정의가 요구되는 법적용어가 아님. 특검 주장대로 ‘승계작업’은 이재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해하면 충분하고, 여러 제반사정과 증거를 통해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는 개념임.

**둘째·넷째 논거**는 1심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인정한 근거사실임. 항소심은 둘째·넷째 논거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이므로, 바꿔 말하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임.

---

2) ①, ②는 1심 판결이 승계작업을 인정한 주요 근거였음. 항소심 판결은 ①, ②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본다고 하여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결국 항소심은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네 가지 논거를 제시했을 뿐, 실상 따져보면 항소심이 제시한 논거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단 하나임.

## **(2)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않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둘째·셋째 논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음. 만약 항소심이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싶었다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둘째·셋째 논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사실과 형벌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 마땅히 갖춰야 할 전문가적 양심이자,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1심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임.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재용이 개별 현안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과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의 통할·조정하는 조직이자,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삼성그룹의 핵심조직인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견회의 후계자로 인정함, 금융·시장감독기구의 전문가들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한 사실이 증거로써 인정됐다면, ‘승계작업’ 자체는 충분히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음. 그것이 우리 사회 대다수가 가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함.

특히, ‘이재용이 개별 현안을 통해 얻은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관한 유리한 결과는 개별 현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가 어려움. 특정 행위를 통해 A, B, C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만으로 A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B, C와 같은 다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A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sup>3)</sup>. 특히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형표 등의 직권남용은 승계작업 없이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움.

---

3) 법원은 파업 목적의 불법성을 따질 때에는, 노동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목적 중에서 주목적이 무엇인지를 ‘법원 스스로’ 가려낸 다음, 법원이 가려낸 파업의 목적이 위법하다면 전체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이 파업의 주목적을 가려낼 때 발휘하던 적극성을 조금이라도 이번 항소심에서 행사했는지 의문임.

결국, 항소심은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와 관련하여 얻은 유리한 결과”와 “승계작업”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둘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기계적이고 법논리적인 판단임.

### (3) ‘승계작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행위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즉,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며, 문형표·홍완선은 합병보고서까지 조작함으로써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안기는 합병을 이끌었는지 설명할 수 없음. 문형표·홍완선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미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지시한 정황<sup>4)</sup>도 인정했음.

박근혜는 이재용과의 독대 등을 통해 최순실, 정유라, 영재센터 등에 대한 뇌물공여를 요구했고,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박근혜의 요구를 받은 이재용은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청탁)로 승계작업에 필요한 현안들의 해결을 요청함. 이재용의 청탁을 받은 박근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문형표·홍완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 이것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임.

여기에 1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인정했던 여러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움. 이는 사실상 법원이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인 물적증거(이들테면,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 실행 계획”과 같은 삼성그룹 내부분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음. 그러나 경제범죄인 뇌물범죄에서 물적증거에 의해 100%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법부가 지금껏 이와 같이 달성불가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해오지도 않았음.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던 것이 청와대 관계자 증언을 통해 밝혀짐.

## 2. 이재용은 ‘정경유착’ 의 공범인가,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인가.

### 1. 항소심의 판단 - 권력자의 ‘겁박’ 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

항소심은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권력과 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 활동은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 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함.

결국 항소심은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에 “경영권 승계”라는 이재용 자신을 위한 이익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항소심은 이재용이 범죄를 저지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함.

### 2. 이 사건의 본질 - 국정 전반을 농락한 역대급 규모의 정경유착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회계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같은 현상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삼성은 이미 다른 대기업집단조차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불법·부당대출이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임. 나아가 최근 이견회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시 드러나고 있듯이, 비자금은 이미 상당히 조성되어 있었음.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견희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음. 이재용은 국정전반을 농락한 박근혜·최순실의 장단을 대규모 뇌물공여를 통해 앞장서서 맞춰주면서, 누구보다 큰 수혜를 입었던 것임. 즉, 이번 사건은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제일 대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획득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임.



## 토론문

---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한 비평

1.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하여

가. 에버랜드와 삼성 SDS 사건이래 10여년간 삼성이 피고인 이재용으로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작업을 해 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그러한 경영권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이나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확인된 우리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1) 20년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증여 받아 16억원 세금 내고 44억원 종자돈으로 시작
- 2) 1995년말 에스원 중앙개발로부터 에스원주식 23억원에 인수. 주식인수직후 1996년 1월30일 상장. 상장 6개월후 주당 30만원대로 주가상승. 375억원 주식전량 매각으로 375억원 시세차익

- 3) 삼성엔지니어링 47만주19억원어치, 주당 5,000원대에 매입. 210억원 상장 후 주당5만9,000원에 매각, 210억원 시세차익
- 4) 1996년 중앙개발 중앙개발지분의 6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CB) 96억원에 헐값으로  
이재용 전량인수 2000년 전량 주식전환
- 5) 1997년 삼성전자 CB 600억원 발행, 450억원 이재용 150억 삼성물산 인수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판결 하루전에 CB를 주식으로 전환 250억원 차익실현 평가
- 5) 1998년 제일기획 CB(사모전환사채)를 주당1만원에 18억원 구입 130억원. 1998년 제일기획 상장직전 CB를 주식으로 전환, 130억원 시세차익 평가
- 6)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230억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 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전량인수 BW 행사가격은7,150원으로, 당시 장외시장의 주식거래가격은 5만원내외
- 7)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CB 저가발행에 대해 무죄확정, 삼성SDS BW 헐값발행에 대해서는 이견희, 이학수, 김인주 배임죄 유죄인정하고 이재용남매는 무죄확정
- 8) 2014년11월14일 삼성SDS 상장 2015년 7월 15일 11억8,000만원의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상장일종가(327,500원) 기준으로 5조5,827억원의 지분가치평가(이재용 3남매만을 기준으로할 경우 4조4,325억원 지분가치평가)
- 9) 2014년 12월 18일 삼성에버랜드(현재일모직)상장 상장일종가(113,000원)기준 이재용 부회장 지분가치 3조5,447억원(1996년 이재용이 인수한 CB는 96억원)

10) 2015년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 183위 8조2,500억원 삼성그룹 상장계  
열사 시가 총액합계 330조6,693억원의 실질적인 CEO

나. 2심은 뇌물공여의 부정한 청탁이 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계열사들에게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 또한 존재하므로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재용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적으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 상황에서 상속세의 최소화, 신규 순환출  
자 고리의 해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은 삼  
성이라는 기업집단의 현안임과 동시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도 직결되는 문제  
였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래 10여  
년 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알  
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 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에 대한 증거에 대한 분석  
을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개별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특히 지난해 11.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해  
당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  
다”고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아무런 묵시적 청탁이  
없는데도 알아서 피고인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  
남용의 범죄를 저지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형표 전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

문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개별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 청탁마저 부정하였습니다.

## 2. 안중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가. 2심이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저에는 중요 증거인 안중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판단이 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안중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안중범의 업무수첩은 수첩에 그 기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로는 쓰일 수 없고 김영한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중범이나 피고인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2심도 이 점을 인정하는바, 안중범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이 한 ‘원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본래의 증거입니다. 나아가 그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다른 증거인 안중범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안중범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업무수첩은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심이 안중범의 업무수첩이 안중범의 법정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중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실제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이 그러한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하였습니다.

라. 안중범 수첩 기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피고인인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중범은 그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안중범의 진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안중범 수첩 기재는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안중범 수첩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마.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중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됩니다. 더구나, 권력과 재벌의 권력

형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2심은 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 3. 뇌물공여죄와 뇌물약속죄 관련

가. 1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 사이에는, 구입할 마필을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여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고,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 살시도 매매대금, 살시도 보험료 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심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사용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에 대한 대금과 말 자체, 보험료, 차량대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2심의 판단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말과 차량의 사용이익과 각 대금·보험료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공된 무형적 이익인 것입니다.

다. 2심은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1억 원짜리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시세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일 것입니다. 말과 차량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

상각이 발생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만큼이 사용이익일 것입니다. 2심은 사용이익 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산정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의 태도는 특경법상의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특경법상 횡령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 이기에 양형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2심은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익’을 횡령금액에서 제외시켜 총 횡령금액을 36억 3,484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특경법상의 50억원 이하로 횡령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이익의 산정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발생합니다.

라.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인 21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위 금액은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지,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마. 특가법처럼 뇌물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인데, 2심은 이와 같은 기본적 법리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가.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달리 73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73억 원 중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삼성이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돈이므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고, 나머지 37억은 마필구입 대금으로서 실제로 마필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예금거래 신고가 자체가 정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36억을 굳이 최순실이 해외에서 자금은닉에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 보낸 것은 뇌물공여의사와 함께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뇌물공여의사만 있고 도피의사는 없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나.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아닌 뇌물수수자 ‘최순실’이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하였을 뿐이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2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이재용이 회사 돈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보냈다가 그 돈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명확한데, 그 과정에 따라 범죄성립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입니다.

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



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2심은 “마필구입대금 37억이 예금거래신고 사유가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로 되어있고, 실제로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은 그 사용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뇌물을 구성합니다.

즉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이란 예금거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의 부동산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라 예금신고만 한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를 통해 뇌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가. 1심은 피고인 이재용 등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중 일부와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마필들(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마필들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마필 자체, 마필 구매대금 자체가 뇌물죄나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말들을 다

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인정됩니다.

라.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최순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것이 됩니다.

##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가.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모든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심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정경유착에 ‘전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심은 자본권력이 무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공동현안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재벌친화적 법안과 정책 추진에 활용한 사실을 눈감았습니다.

다. 2심은 “뇌물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을 가장, 은폐하는 행위도 병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계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대로 하더라도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2심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범죄의 내용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욱이, SK 그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뇌물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재벌들도 소극적으로 임했으나, 삼성은 최순실과 직접 만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재벌과 비교해 보아도 삼성이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이번 판결도 보아 사실상 3.5률이라고 하는 재벌총수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인정하려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천 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였던 두산 일가. 1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 원 탈세와 1천500억 원대 배임이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이건희 회장. 범죄 종류도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상하게도 법원의 판결은 똑 같았습니다.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들은 이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거나, 감옥에 갔다가도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이 넘으면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유독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억지로 3년 이하의 형량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마. 최근 들어 수백억대 횡령으로 다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이 2년 반 넘게 감옥에 갇혔고, CJ 이재현 회장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이제 이 공식이 깨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 뇌물이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이번 판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학설의 통설은 이 제11조로부터 모든 국민은 평등한 처우(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이 도출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원리로서의 평등원칙이 도출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따지는 평등심사를 ‘합리성 심사’ ‘자의성 심사’라고 부른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것이고,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규정한 것은 차별금지의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학설의 통설은 본다. 즉, 이 이외에도 학력, 건강, 정치 성향, 연령, 출신지역, 인종, 언어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관련해 학설의 소수설인 ‘선천적 신분설’은 이를 ‘출생’에 의해 고정되는 사회적 지위로 본다. 즉 준비속의 지위, 봉건사회의 귀족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비해 학설의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후천적 신분설’은 선천적 신분은 물론이고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고 있는 지위도 “사회적 신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즉, 부자, 전과자, 공무원 등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지위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어 차별금지사유로 특별히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

## II. 이번 판결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다.

### 1. ‘사회적 신분’에 따른 법적용상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재벌총수 승계자, 즉 ‘부자’라는 지위는 특히 헌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며, 이 판결이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회적 신분을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여 거의 모든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측에 특히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이 판결은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의 임직원들 등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특히 헌법이 차별금지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적용에 불합리한 차별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법적용상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들의 입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손꼽히는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사건 등의 경우에 과거 재판의 결과가 3:5법칙의 적

용을 받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 일심에서는 실형이 나오다가도 재벌총수가 횡령 혹은 배임액을 사비로 갚는다든지 하면 개선의 정을 보이고,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한다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것이 거의 공식화 되었었다. 그 후 재벌총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이런 3·5법칙이 사라진 듯 하더니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3·5법칙에 근접하는 형량이 선고되었다. 백번 양보하여 이번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들(승마와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여원·말 사용이익·차량 사용이익에 관한 뇌물공여, 여기에 회사돈을 사용한 횡령, 승마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재단 기부 언급부분을 제외한 국회에서의 위증)만 놓고 보더라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의 액수가 36억원을 넘고 국회에서의 위증과 횡령 등이 있는데도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종래의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도저히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 2.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 형평에 맞고 모순됨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 III.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는가?

- 이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의 전형’(1심 판결)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주시해 온 다수 국민들의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어떠한 법리를 동원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적으로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무죄 인정이나 양형에서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남용한 판결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이재용 2심 판결과 경제정의 실현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이번 서울 고법의 이재용 2심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삼성 개혁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됨.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제까지 미적거리던 삼성 개혁의 각종 정책과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국가적 숙제를 떠안게 되었음.

- 이제까지 이런 저런 사유로 미루어 온 재벌 개혁 특히 삼성 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임.
- 적당히 욕 안 먹는 눈치 보기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려는 알박한 속셈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이를 철저히 폐기해야 할 것임.

### 1.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 (1)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의 개정

삼성생명은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보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하라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취지를 왜곡한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의 도움을 얻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중.

- 총자산의 3% 충족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분모는 시가로 평가함에 비해 분자인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꼼수
- 분자는 고정 수치인데 분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므로 규제 유효성 상실

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국회나 국무회의를 개최할 필요도 없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장이라도 개정 가능.

- 따라서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의 개정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개혁 의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개정하여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삼성의 출자구조를 시정해야 할 것.

## **(2) 이견희 차명계좌 과세 및 한남동 수표에 대한 사법처리 착수**

이견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는 국회 민주당 TF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의 비협조로 난항 지속 중.

- 과연 이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에 이른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실종되었던 상황.
- 국세청은 지난 12월,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해 금융기관에 한 차례 “납부 안내”를 고지만 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철저한 무시에 대해 일체 반응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송 중.
-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도 금융위의 궤변에 대한 아무런 통제 없이 시간만 허송 중.

한남동 수표 건은 이 사건이 작년 5월에 언론에 보도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적 수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중.

- 한남동 수표는 결국 비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 누가 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견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마땅함.

### (3) 이견희 총수 일가의 해외 은닉 계좌에 대한 일제 조사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해외에 월별 잔액 기준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매년 6월에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제34조의2).
- 또한 이런 해외 계좌 은닉은 거의 언제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등을 수반하고, 그 조성과정에 횡령이나 배임 등이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큼.

작년 6월의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및 작년 10월의 기재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견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사실이 일부 드러남.

- 송영길, 박영선 의원 질의와 한승희 국세청장 및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사실상 시인.
- 그러나 자진신고에 의해 형사상 처벌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이들 범죄는 그 죄질이 위중하여 자수감경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음.
-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들이 이미 시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자수를 감안한) 처벌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견희 총수 일가가 과연 해외 은닉 계좌를 모두 성실하게 신고했을 것인가 하는 점임.

- 만일 자진신고를 가장하여 그 중 일부의 계좌만 신고하고 나머지 계좌는 계속 은닉하고 있다면, 자진신고의 진실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이견희 총수 일가의 해외 은닉계좌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임.

## 2. 국회의 재벌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 (1)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이건희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불비로 현행 법률로는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
-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회는 시급히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심신미약자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처벌받은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2)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으나 가장 중요한 궁극적 시정 조치인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제」는 발표에서 제외.

- 금산복합그룹이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갖추지 못해 금융체제 전반에 체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이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궁극적 교정수단이 바로 금산복합그룹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집단을 분리하도록 하는 계열분리 명령제임.
- 그리고 유사시 금융회사의 집단만을 분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금융지주회사 산하로 집중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명령제」도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
-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산하에 계열 금융회사를 집중시키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 명령만 내려도 즉각 출자구조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 발생.

## 토론문

---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 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

2018. 2. 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 2556)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 중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혐의 중 ‘안민석 위원 질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 뿐이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 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

## 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근혜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서술하여, 마치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섯 달 동안 민의의 광장에서 이러한 재벌의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 금액 80억 9,095만원을 항소심 결심 전날인 2017.12.26.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이율 배반적 행태(<https://goo.gl/SesDjy>)를 보였다.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늘 재벌총수 이재용‘만’을 위한 판결을 위한 내린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

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亂場)에 다름 아니다. 2심 사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부정하고 오로지 재벌권력에 대한 비호를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끝.